

◆ D-48 근로자에 회사로부터 받은 가불금 또는 대출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?

근로자가 받는 임금이나 퇴직금은 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,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를 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을 상계할 수 없음은 물론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약정을 할 수도 없다. 따라서 위 대여금등은 민사상 절차에 따라 소액심판청구(2000만원 이하)를 하여야 한다.